농민기본법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88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이병진・이재관・김한규

이상식 • 이원택 • 정성호

김동아 · 윤후덕 · 윤준병

권향엽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농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수는 99만 9,000가구로 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52%가량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농촌 지역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악화, 인구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은 단순히 농촌 지역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하였고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11.4% 불과함.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전 세계 113 개국 중 39위,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이에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소득보장 등을 통해 농촌의

소멸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자급을 위해 이 법을 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식량자급을 달성하여 국민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 나. 모든 국민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 등의 식량주권 확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 방출로 국민과 농민의 건강에 위해 발생, 토종식물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등이 일 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 등에 국산 농산물및 그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경작자인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바. 국가는 농업·임업·농촌·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안 정, 소규모농가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업·임업·농촌·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충분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인력 확보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민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농민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식량자급을 달성하여 국민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업은 식량주권의 확보와 식량자급 달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 2. 농민은 식량 생산 주체로서 농민의 권리를 누리고 농업·농촌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 농촌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 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 4.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 5.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 득안정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식량주권의 확보) ① 모든 국민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충분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 ② 모든 국민은 농업과 식량 체계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 ③ 농민은 국토와 수자원, 종자, 가축 및 생물다양성을 이용하고 관리하여 식량을 생산할 권리를 갖는다.
- 제6조(식량자급의 달성) 국가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지 및 생산기반 확충, 농업 종사자 확대,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안전성 확보, 농업 기술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환경 방출로 국민과 농민의 건강에 위해 발생, 토종식

- 물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종자권) ① 농민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신이 보유해온 종자 및 관련 지식을 보전하고 활용에 따르는 이익을 공유하며 농가에서 보존한 종자의 보관·활용·판매 등의 종자권을 가진다.
 - ② 국가는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민이 보유해온 종자의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국산 농산물 우선 구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에 국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농지 임차인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경작자인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공익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국가는 농업·임업·농촌·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안정, 소규모농가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업·임업·농촌·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농촌거주 노인에 대한 돌봄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충분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인력 확보와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농민기본소득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필수농자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민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